연구윤리 및 운영규정

제정 : 2010년 12월 1일
개정 : 2011년 9월 30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4조에 따라 (사)한국방사선산업학회 (이하 '본 학회'라 칭함)의 학술지 발간 등 제반 학술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학술 연구의 도덕적 의무,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며, 연구수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윤리 기준 및 운영절차를 명확히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능)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들로 하여금 '지적 소유권'의 가치를 인식시키며 인격과 아울러 타인의 지적 재산을 도용하지 않아야 하며 순수한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억제하며 연구자의 인격 형성과 연구 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제2장 연구윤리

제3조 (저자 윤리)

1. 본 학회 학술지에 저자로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방사선산업학회지 논문 투고요령'에 나타난 투고 관련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타인의 주장이나 연구 결과를 객관적인 구분 없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타인연구)로 간주한다.
3.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객관적인 구분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재차 표현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중복 게재 (자기표절)'로 간주한다.
4. 연구지원비를 받은 논문은 지원기관의 관리규정을 준수한 논문이라야 투고할 수 있다.
5. 저자는 자신이 공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4조 (편집위원회 윤리)

1. 편집위원은 편집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및 게재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함께 갖는다.
2. 편집위원은 논문의 저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제출한 연구물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부여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윤리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 윤리)

1. 심사위원은 소정의 심사규정에 따라 투고 논문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연구자와 관계 등을 보아 자신이 심사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저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의 표현에 있어 저자의 인격을 전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며 논문의 질을 높이는 수준으로 안내하는 교육성이 있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공적 (公的) · 사적 (私的)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본 학회의 논문심사는 단독 비밀 심사의 형식을 견지하면서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학술지가 출판되기 이전에는 일체의 사적 (私的)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운영

제6조 (윤리규정 준수)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되고, 발효와 동시에 시행된다.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본 학회는 연구윤리를 심사하기 위하여 학회 회장과 임원으로 구성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회장은 그 위원장이 되고 임원은 그 위원이 된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 기능)

1.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위반되는 상황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심의하고 의결한다. 위원장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하고 그 의결사항은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다음 총회에 반드시 보

고해야 한다.

2. 접수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관련자에 대한 신원 정보는 최종 의결 시까지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윤리규정 위반 제보)

1. 본 학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연구윤리위원회에 비밀로 제보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 등이 투고 논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윤리규정 위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보한다.
3. 연구자의 논문이 게재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추후에라도 문제성이 발견될 때에는 상응한 조치를 한다.

제10조(조사 및 심사)

1. 본 학회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별도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제보에 따른 조사 대상의 투고 논문은 그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일단 게재 유보조치를 취하고, 다음 학술지 발간 이전까지 심의해서 완료한다.
3. 연구윤리 위반사항의 조사 및 심사 절차는 첨부 1과 같다.

제11조(소명 기회)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 소명의 방식에는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개적인 논의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위반 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피조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3조(징계의 유형)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정된 경우 이사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보고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징계를 결정하며 중복하여 징계할 수 있다. 연구비 수혜의 경우 부당 집행으로 그 지원기관으로부터 심각한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1. 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사항 공지
2. 해당논문 학술지목록 삭제, 게재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향후 5년간 논문 투고 정지

제14조(기타) 상기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2010. 1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된 연구윤리 규정 위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소급 적용될 수 있다.

부칙 (2011. 9. 30)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된 연구윤리 규정 위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소급 적용될 수 있다.

투 고 규 정

제정 : 2007년 10월 5일
개정 : 2017년 5월 26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사선산업학회(이하 "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방사선산업학회지」(이하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의 작성과 처리 및 발간에 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이다.

제1장 일반지침

제2조(원고의 성격과 구분) 방사선 산업에 관련된 이론 및 응용 분야를 기술한 원고로서 논문, 기술논문, 산업논문, 서신으로 구분한다. 특별기고와 해설은 편집위원회가 내용과 범위를 정하여 촉탁한 원고로 한정한다.

1) 논문: 논문은 독창적인 내용이거나 응용의 경우에는 심층 분석한 것으로서 이미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논문은 독자가 과정을 재현하고 결과를 집중할 수 있도록 내용이 충실히 기재되어야 한다.
2) 기술논문: 실용 기술적 문제에 대한 조사, 분석, 개선방법 및 결과, 검토 등의 내용에 관한 논문으로 기본형식은 논문에 준한다.
3) 산업논문: 논문의 성격을 가지나 예비적이거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로 논문에 준하여 작성한다. 고유 자료를 포함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완전한 결과와 최종 결론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4) 서신: 간단한 정보의 제공, 편집 정책이나 게재된 내용에 대한 의견, 서신에 대한 답변 등을 수록한다.

제3조(투고자격) 저자와 교신저자는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비회원의 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제4조(원고의 제출)

① 저자는 원고와 제출문을 편집위원회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Figure가 사진인 경우에는 해상도가 높은 원본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다.
②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원고가 채택되고 게재 전에 보완이 완료된 원고는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다만, 그림과 사진은 충분한 해상도 파일로 제출한다. 이때 필요한 인쇄상의 요구사항(칼라인쇄 등), 별책 부수 등 요구사항을 같이 제출한다.
④ 이미 발간된 자료의 표나 그림을 옮겨 사용할 때에는 저자가 원저자와 출판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원고에 명시해야 한다.

제5조(기타)

① 원고의 내용이나 교정의 최종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② 사진을 포함하는 원고는 흑백으로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저자의 요청에 따라 칼라인쇄나 특수한 인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추가 인쇄비용을 저자가 부담해야 있다.
③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한하여 별책을 지급한다. 추가 별책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제2장 원고준비 세부지침

제6조(사용언어) 원고의 사용언어는 영문 또는 국문으로 한다. 국문 원고의 경우에도 표나 그림(캡션 포함)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참고문헌도 가능한 한 영어로 작성한다.

제7조(원고체재)

① 논문의 순서는 아래의 순으로 하며, 표지를 제1페이지로 하여, 각 항목은 새로운 페이지로 시작한다. 논문 투고 시 원고체재의 순서를 따르되, 다만 논문 성격상 이를 준수할 수 없을 경우 원고체제를 조정될 수 있다.

1) 표지: 논문 제목, 저자 및 소속은 국 · 영문으로 병기하고 소속기관은 해당 연구자의 이름 우측 상단에 첨자 1, 2, ... 로 표시하고 그 주소를 명시하며, 교신저자는 저자명의 우측상단에 첨자 *로 표시하고, 연락처(이름,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를 영문으로 기재한다. 영문 저자명의 경우 이름, 성 순으로 기재한다.
2) 초록(abstract): 국 · 영문 논문 공히 영문초록(300단어 내외)을 쓴다.
3) 서론(Introduction)
4) 재료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5) 결과(Results)
6) 고찰(Discussion)
7) 결론(Conclusion)
8) 사사(Acknowledgment)

9) 참고문헌 (References)

10) Table 및 Figure

11) 그림 설명문 (Legend for figure)

②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고 함축성 있게 표시해야 한다. 논문 제목의 하단에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저자명, 소속 학교 또는 기관명을 기재한다. 저자명의 영문 표기는 full name (예: Gil Dong Hong)을 원칙으로 하며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뒤에 쓴다. 책임저자의 연락처는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한다. 논문의 상단에 게재할 소제목 (running title)을 기재하며 소제목은 한글 논문이면 8 단어 이내, 영문이면 60자 이내의 구 (phrase) 형태로 한다.

③ 요약 (Abstract)은 하나의 문단으로 작성하되 연구의 목적, 방법, 주요 결론이 설명되어야 한다. 영문 제목에서 각 단어의 첫 자는 대문자로 한다 (전치사, 관사, 접속사 제외).

④ 핵심용어 (Key words)는 영문 5 단어 내외로 작성하며 첫 자를 대문자로 기재한다.

⑤ 재료와 방법에서는 연구의 계획, 대상 및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한다. 실험 방법이 주안점인 경우 다른 사람이 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원고심사 시 저자명이나 저자의 소속이 노출될만한 기관명 등을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⑥ Table과 Figure (캡션 포함)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다 (필요하면 캡션이나 미주로 충분히 설명). 도표의 글자 크기와 선의 굵기는 인쇄할 크기로 축소 (대부분의 그림은 2단 중 1단 폭으로 축소됨)를 예상하여 적절한 크기와 굵기로 작성한다. 표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Table이나 Figure의 제목은 내용을 함축한 명료한 구 (phrase) 형태로, Figure의 설명은 문장 (sentence) 형태로 기술한다. Table 및 Figure의 제목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각 Table은 별도의 페이지에 인쇄한다.

⑦ 참고문헌 목록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적는다 (아래 예시 참조).

1)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반드시 인용된 것에 한하며, 본문 속의 참고문헌은 국문 논문의 경우에는 국문으로, 영문 논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인용한다 (이와 김 2005; 박 등 2006), (Kim and Lee 2005; Park *et al*. 2006a, b).

2) 참고문헌은 국문과 영문의 순서로 기재하며, 국문 참고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순을 우선하고, 영문은 저자명의 알파벳과 출판 연도의 순서에 따라 아래의 예처럼 기재한다. 또한 참고문헌의 모든 저자명을 열거한다.

3) 잡지, 단행본, 단행본 내의 한 chapter 인용 각각의 경우에 참고문헌 표기 예

3-1) 학술지 : 저자명, 연도, 제목, 잡지명 (이탤릭체), 권 (호): 면수 (굵게), (첫페이지와 끝페이지) 순서로 작성하고, 잡지명의 약어는 SCI의 표기 방법에 따른다.

예) 최희주, 조동건, 최종원, 한필수. 2006. 고준위 폐기물 처분용기 주변에서의 지하수의 방사분해에 의한 음 전류 밀도 유도. 방사선방어학회지. **31**(2): 105-113.

예) Chung YS, Kim SH, Moon JH, Kim HR and Kim YJ. 2006. Characteristics of the pneumatic transfer system and the irradiation hole at the HANARO research reactor. *Nuc. Eng. Tech*. **38**(6):585-590.

3-2) 단행본을 인용했을 때: 저자, 연도, 서명, 판차, 출판지, 출판사, page to page 순서로 적는다.

예) Eisen HN. 1974. Immunology, An introduction to molecular and cellular principles of the immune respone. 5th ed. 407pp. Harper and Row, New York.

3-3) 단행본에서 한 chapter를 인용했을 때: 저자, 연도, chapter명. 다음에 *In*: 을 사용하여 편집인명, 책명, 판차, 출판지, 출판사, page to page 순서로 적는다.

예) Peters LJ, Ang KK and Thames HR. 1992. Altered fractionation schedule. pp. 97-113. *In*: Principles and Practice of Radiation Oncology (Perez CA and Brady LW eds.), Lippincott Co., Philadelphia, PA.

⑧ 발간 중인 것은 (발간 중) 또는 (*in press*)를 적는다.

⑨ 비공식적이거나 독자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없는 자료는 참고문헌이 아닌 각주로 밝힌다.

제8조 (형식요건)

① 원고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 (210×297 mm)에 2행 간격 (200%)으로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각 변에 최소 25 mm 이상의 여백을 둔다. 본문의 글자 크기는 10호로 하며, 2열 간격으로 배열한다.

② 1인칭 표현을 용인하지만 가급적 3인칭 표현을 사용한다.

③ 국문 원고의 용어는 가능하면 한글 (외래어 표기 포함)로 쓰고 필요한 경우 괄호에 영문이나 한자를 병기한다.

④ 원소의 질량수는 좌상 첨자로 표기한다. 질량수가 표기되지 않은 원소명은 풀어 쓴다 (예, ^{90}Sr, ^{131}I, strontium, iodine을 사용, Sr-90, I-131은 사용 억제).

⑤ 약어는 처음 나타날 때 풀어 쓰고 괄호에 약어를 보인 다음에 사용한다.

⑥ 아라비아 숫자와 SI 단위를 사용하고 단위는 숫자와 한 칸을 띄어 쓴다. 슬래쉬(/) 대신 지수($^{-1}$)를 사용한다(예: 1 mSv/h 대신 1 mSv·h^{-1}).

⑦ 십진 멱은 E가 아닌 우상 첨자를 사용한다(2.58E-4가 아닌 2.58×10^{-4}을 사용).

⑧ 각주는 CBE 체계에 따라(* † ‡ § ‖ ¶ #의 순서) 우상 첨자로 쓴다. 표의 미주는 영문 소문자와 우괄호[예: data[a)]]를 우상 첨자로 표기하고 8호 크기 글자로 미주를 쓴다.

⑨ 한글 지명의 로마자 표기는(정부명칭 참조)의 표기지침을 원칙으로 한다.

⑩ 생물 종명(scientific name)은 이탤릭체로 한다.

제9조(원고제출)

① 원고를 편집위원회 논문접수메일에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저자는 반드시 제출논문을 MS-Word 또는 HWP 형식의 파일 작성하여 전자메일을 통하여 투고한다.

② 원고는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지정한 3인이 심사한다.

③ 원고의 채택 여부는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게재될 원고의 교정은 3회를 원칙으로 하며, 초교와 3교는 반드시 저자가 교정하도록 한다.

⑤ 접수된 원고를 심사위원에게 송부 시 저자 및 소속기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연구출판윤리)

① 투고된 원고는 한국방사선산업학회지 연구윤리규정을 따르며, 학회지 연구윤리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출판윤리(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를 따른다.

② 투고된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제11조(심사) 논문심사는 한국방사선산업학회지 심사규정을 따른다. 다만, 학회 사정상 이를 준수할 수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12조(심사료 및 게재료)

① 접수된 모든 원고의 심사료는 40,000원이며 논문접수시에 납부한다.

② 심사가 완료된 원고에 대하여 200,000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단, 게재된 원고가 인쇄본 8페이지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 페이지당 20,000원씩의 초과 게재료를 징수한다. 또한, 컬러인쇄가 요구되는 경우 저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다만, 편집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논문 별쇄본은 20부 기준 30,000원이며 인쇄본 12페이지를 초과하였을 경우 추가 비용을 징수한다.

제13조(발행) 학회지 발행은 년 4회로 하며, 발간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로 한다. 다만, 학회 사정상 이를 준수할 수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